| 의 안 번 호 | 1669 | 【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】 |
|---|---|---|

# 검 토 보 고 서

## 1. 검토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20. 10. 6.(화)
나. 제 출 자 : 박경흠 의원 외 3명
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0. 10. 6.(화)
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0. 10. 20.(화)

## 2. 제안이유

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해 국가권익위원회의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춰 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가. 근거 법령에 따른 목적 내용 정비(안 제1조)
나.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명칭 변경(안 제2조제1호)
다.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항목 추가(안 제4조제3호)
라.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(제명 띄어쓰기)

## 4. 관련법령

가.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제7조(행정정보의 공표 등)
나.「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」제5조(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)

## 5. 검토의견

본 개정 규칙안은 『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』에 따라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항목을 추가하고자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

# 관 련 법

##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

**제7조(행정정보의 공표 등)**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·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,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
2.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(工事)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
3.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
4.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

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3. 8. 6.]

## 「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」

**제5조(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)** 의원은 여비,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지방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.